

1 장애, 청각-시각 장애, 또는 여러 복합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이며 상기 사유로 인해
2 특수 교육과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뜻합니다.

3 (20 U.S.C. section 1402(3); 34 C.F.R. section 300.8; Education Code section 56026.)
4

5 **평가**라 함은 주정부 및 연방법에 따라 귀 자녀의 장애 여부와, 귀 자녀가 교육적 이득을
6 위해 필요로 할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귀 자녀를 여러
7 가지 시험과 도구를 통해 측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평가에 사용되는 도구는 귀 자녀를
8 위해 개별적으로 선정하며, 특별히 교육을 받고 전문지식을 소유한 학교 교육국의
9 전문가들에 의해 진행됩니다. 이 시험에는 학교에서 모든 아동들이 보는 기초 실력 측정
10 시험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11 (34 C.F.R. sections 300.15, 300.304 – 300.311; Education Code sections 56302.5 and
12 56320.)
13
14

15 **무상의 적합한 공공교육(FAPE)**이라 함은, 연방법에 의해 특수 교육과 이에 관련된
16 서비스로 다음과 같습니다. (1)공립학교의 감독과 방침 아래 공립 교육비로 충당하여
17 귀하가 부담하지 않고; (2) 캘리포니아 교육국(CDE)의 기준에 준수하며, (3) 귀 자녀의
18 교육적 이득을 위해 서면으로 작성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에 따라 제공하고, (4) 주
19 정부의 적합한 프리스쿨, 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에서 제공하거나 교육구 내에
20 적절한 프로그램이 부재할 때 비공립학교에서 제공합니다.

21 (20 U.S.C. section 1402(9); 34 C.F.R. section 300.17; Education Code section 56040.)
22
23
24

25 **최소 제한적 환경(LRE)**이라 함은, 장애를 가진 아동이 최대한의 적절한 한도 내에서 비
26 장애 아동과 함께 같은 환경에서 교육 받으며 이들의 장애 상태나 심각성이 보조 기구를
27 사용하고 보충 서비스를 받는다 할지라도 정규 교실에서의 교육이 만족스럽지 못할
28 때에만 별도의 수업을 듣게 하거나 특수학교로 보내거나 정규 교육 환경에서 분리
29 합니다.

30 (20 U.S.C. section 1412(a)(5); 34 C.F.R. section 300.114; Education Code section
31 56040.1)

1
2
3
4 **관련 서비스**라 함은, 교통편 제공과 함께 초기에 장애를 확인하고 장애 상태를 분석하는
5 것을 포함하여 특수 교육으로부터 특혜를 받는 장애를 가진 아동을 돕기 위해 필요한
6 발달, 교정, 지원 서비스를 뜻합니다. 관련 서비스에는 다음 사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7 1. 말-언어 병리학과 청력학 서비스
- 8 2. 통역 서비스
- 9 3. 심리학적 서비스
- 10 4. 물리 요법과 작업 요법
- 11 5. 레크리에이션, 건강 치유에 도움이 되는 오락 포함
- 12 6. 카운셀링 서비스, 재활 카운셀링 포함
- 13 7. 오리엔테이션과 이동 서비스
- 14 8. 학교 간호사 서비스
- 15 9. 진료와 평가 목적만을 위한 의료 서비스
- 16 10. 소셜워크 서비스
- 17 11. 학부모 카운셀링 및 교육

18 (20 U.S.C. section 1402(26); 34 C.F.R. section 300.34; Education Code section 56363.)
19
20

21 **특수교육**이라 함은, 특별히 고안된 수업으로서 부모님의 비용 부담 없이 장애를 가진
22 아동의 특별한 필요에 맞춰 교실, 가정, 병원, 공공 시설 등 다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23 학습과 체육교육을 뜻합니다.

24 (20 U.S.C. section 1402(29); 34 C.F.R. section 300.39; Education Code section 56031.)
25
26
27

28 교육 기록 열람

29 캘리포니아 교육법에 도입된 연방 가족 교육법과 사생활 보호법 (FERPA) 조례에
30 의해 학교 교육국에 등록된 아동의 학부모는 아동의 기록을 검사 할 수 있는 권리가
31

1 있습니다. 연방과 주법에 의하여, 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는 (양육권을 갖고 있지
2 않지만 다른 권리에 대해 제한을 받지 않은 부모도 포함) 귀 자녀에 대한 모든 교육적
3 기록과 **FAPE** 의 조건을 조사하고 검토하며, 기록에 대한 설명과 번역문을 불필요한
4 지연없이 제공 받을 권리가 있고 그 시기는 귀 자녀의 **IEP** 회의 전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5 회의(**resolution session**) 또는 법적 청문회 전을 포함합니다. 캘리포니아 법령에 의하여
6 부모들은 교육 기록을 검토하고 복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학생의
7 교육적 권리를 말아서 주관할 관리자를 법원에서 지정한 아동의 경우를 제외하고,
8 아동이 **18** 세를 넘을 때, 권리가 아동에게로 이전됩니다.

9
10
11
12 각 학교의 기록의 관리인은 각 학교의 교장입니다. 교육구의 기록 보관은
13 특수교육부장입니다. 학생의 기록은 학교 또는 학군 사무실에 보관되나 어느 한
14 장소에서의 기록 열람의 서면 요청은 학교 또는 학군의 모든 기록을 다 포함합니다. 이
15 기록의 관리자는 (요청함에 따라) 아동의 기록형태와 보관 장소에 대한 정보를
16 여러분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귀 자녀의 특수교육 기록 사본은 교육구의
17 특수교육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18
19
20 교육 기록의 검토 및 복사는 부모가 구두로나 서면으로 요청을 한 날로부터 정상
21 근무일인 **5** 일 안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사비용과 검색 비용은 청구하지 않으나
22 지역의 규칙에 따라 복사비용을 청구하되, 이로 인해 부모가 기록을 보는 데에 어려움을
23 겪게 되는 경우에는 면제합니다. 일단 완전한 복사본을 제공하였다면, 추가 사본을
24 원하실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내셔야 합니다.

25 (20 U.S.C. section 1232g; 34 C.F.R. section 99.1-99.67; 34 C.F.R. section 300.613;
26 Education Code sections 49060-49079; Education Code sections 56041.5, 56043(n)
27 and 56504.)

1 consent)라 함은, 귀하가 귀하의 모국어로나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으로 귀 자녀에 대한
2 평가와 교육적 배치에 대해 모든 정보를 충분히 받아 이해하였고 서면으로 동의하였다는
3 뜻입니다. 귀하는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으며 후에 언제든지 취소 할 수 있습니다.
4 초기 평가에 대하여 귀하가 동의하는 것은 아동의 배치와 특수 교육과 이에 관련된
5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완전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구에서는
6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동의를 나중에 따로 요구하게 됩니다. 귀 자녀가
7 재평가를 받을 때에도 사전 정보를 드린 후 동의를 구할 것이며 귀하의 동의를 구했지만
8 답변을 주지 않았을 경우를 제외하고 재평가를 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9
10
11 만일 귀하가 초기 평가를 위하여 동의를 제공하지 않거나 동의 요청에 답변하지
12 않을 경우에는 교육구에서 법적 절차를 통하여 초기 평가를 강행할 수 있습니다.

13
14
15 만일 귀하가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의 도입에 동의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16 교육구에서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되며 서비스를 제공할 길을 강구하기
17 위하여 법적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18
19 과거에 서비스를 받는 것에 동의를 하였더라도, 특수 교육과 관련된 서비스를
20 처음 받고 난 후에 언제라도 계속해서 특수 교육과 관련된 서비스를 받는 것에 동의한
21 것을 서면으로 철회한다면, 교육구에서는 귀 자녀에게 제공하는 특수 교육과 관련된
22 서비스를 멈추기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중재 요청 또는 법적 청문회를 통해 서비스를
23 제공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24
25
26 만일, 귀 자녀가 특수교육과 관련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하여 귀하가 서면으로
27 동의하였으나, IEP의 모든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귀하가 동의한 프로그램
28 부분은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연하지 않기
29 위함입니다. 만일, 제시된 특수 교육 프로그램 중의 한 부분에 대하여 귀하께서 동의하지
30 않았으나 교육구에서는 귀 자녀에게 무상의 적합한 공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31

1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면, 교육구는 청문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2 청문회의 판결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이 있습니다.

3
4
5 재평가를 하게 될 경우, 교육구에서는 귀하의 동의를 얻기 위해 합리적인 방안을
6 동원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만일, 귀하가 답변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7 교육구에서 귀하의 동의 없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8 (20 U.S.C. sections 1414(a)(1)(D), 1414(c) and 1415; 34 C.F.R. sections 300.9 and
9 300.300; Education Code sections 56021.1, 56321(c) and (d), 56346, 56381(f) and
10 56506(e).)

11
12 아동의 부모가 누구인지 밝힐 수 없고 교육구가 부모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면,
13 교육구에서는 장애를 가진 아동의 대리부모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개인이 지정되도록
14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거주지가 없는 아동이나 법원에서 교육적 대표자가 지정되지
15 않은, 보호 또는 감시를 받아야 하는 아동에게 대리부모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16 (20 U.S.C. section 1415(b)(2); 34 C.F.R. section 300.519; Education Code section
17 56050; CA Rules of Court Rule 5.650.)

20 평가 절차에 대한 보호

21 “평가”라는 용어를 연방법에서는 “evaluation”이라 하고 캘리포니아 주법은
22 “assessment”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교육구의 직원 사이에서와 본 통지서에서 혼용될 수
23 있습니다. 교육구에서는 특수교육에 대한 추천을 받거나 귀하께서 서면으로 평가를
24 요청하신 후 15 일 이내에 문서로 된 평가계획을 부모님께 제공해야 합니다. 귀하는
25 최소한 15 일 이내에 이 계획서를 검사하고 동의서를 보내주셔야 교육구에서 평가
26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귀 자녀에게 다른 분야에서도 장애가 있다고 의심이
27 된다면 이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후, 교육구에서는 여러분의 서면
28 통지를 받은 후 60 일 이내에 평가를 끝내고 귀 자녀의 교육적 필요가 무엇인지 판단하기
29 위한 IEP 를 작성합니다. 그러나, 학교 휴업일 또는 방학이 겹치거나, 귀하께서 귀 자녀가
30
31

1 평가를 받지 못하게 한다거나, 귀 자녀가 타 교육구로 전학을 가서 귀하와 타 교육구가
2 평가를 마칠 수 있는 날짜를 다시 정한다면 그 기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4
5
6 IDEA 에 의거하여 교육구에서는 평가를 시행할 때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7
- 8 1.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을 사용하여 필요한 기능적, 발달적, 학습적 정보를
9 취합합니다. 이 정보에는 부모가 제공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아동이 장애가
10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아동의 IEP 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또한
11 아동이 일반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나
12 프리스쿨 아동의 경우 적절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관련된
13 정보를 포함합니다;
 - 14
15 2. 아동의 장애 여부를 판단하거나 아동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결정하기
16 위해 오로지 한가지 방법만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17
 - 18 3. 지능과 행동 및 신체와 발달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는 요소를
19 평가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견고한 도구를 사용합니다.
20
21

22 교육구는 귀 자녀를 평가할 때 사용한 시험과 기타 평가 자료가 인종이나 문화나
23 성의 차별이 없게 하고 명백히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아동의 모국어로나 다른
24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아동에게 시행한 어떠한 표준화 된
25 시험은 의도된 사용 목적에 준수하는 것이 인증되었고, 훈련을 받고 전문 지식을 갖춘
26 직원이 시행하며, 시험 제작 회사에서 제공하는 지시에 따라 시행합니다. 귀 자녀는
27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모든 분야에서 평가를 받게 되며, 교육구에서는 귀 자녀의
28 교육적 필요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평가
29 도구와 방법을 활용할 것입니다. 귀 자녀의 평가가 끝나면, 귀하와 이 분야에 전문
30
31

1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아동의 장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장애 여부에
2 따른 자격 조건에 대한 평가 보고서와 서류 등의 사본을 귀하께 드립니다.

3
4
5
6
7 귀 자녀의 자격조건을 결정할 때, 읽기와 수학의 수업 부족으로나 영어가
8 능숙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 장애를 가진 아동이라는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9
10
11 초기 평가의 한 부분으로(상황이 적합하다면), 그리고 이 조항에 따른 어떠한
12 재평가의 한 부분으로, IEP 팀과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는 상황이 적합하도록 다음과
13 같이 수행합니다:

- 14 1. 아동의 현재 평가 데이터를 검토합니다. 여기에는 귀하가 제공한 평가와
15 정보와 교실 내에서 이루어진 평가와 관찰과, 교사의 관찰이 포함됩니다;
16 그리고
- 17 2. 상기 검토내용과 귀하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다음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18 필요한 추가 데이터가 무엇인지 밝혀냅니다:
 - 19 a. 아동에게 특정한 장애가 있는지, 또는 재평가의 경우 같은 장애가
20 지속되고 있고 계속해서 같은 교육의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한 여부;
 - 21 b. 아동의 현재 성과 수준과 관련된 발달 부분의 필요 파악;
 - 22 c. 특수 교육과 그에 관련된 서비스의 필요성, 또는 재평가일 경우,
23 아동이 계속해서 특수 교육과 그에 관련된 서비스가 계속
24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 25 d. 아동의 IEP 에 정해진 측정가능한 연간 목표를 달성하고 상황에
26 따라 일반 교과과정에 참석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특수교육과
27 그에 관련된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지에 대한 여부.
28
29
30
31

1 일반적으로, 재평가는 3 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IEP 팀에서
2 귀 자녀가 계속해서 장애를 가진 아동이라는 판단을 받게 하고 아동의 교육적 필요를
3 파악하기 위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교육구에서 귀하에게
4 연락하여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통보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후에도 귀 자녀에
5 대한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측에서 귀하로부터 재평가 요청을 받지
6 않았다면, 교육구에서는 귀 자녀에 대한 재평가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7
8
9 귀 자녀가 더 이상 장애를 가진 아동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기 전에, 교육구는 상기
10 열거한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11 (20 U.S.C. sections 1414, 1415, 34 C.F.R. sections 300.301 – 300.306; Education
12 Code sections 56320,56321, 56329, and 56381.)

13 14 15 독자적 교육 평가

16 교육구에서 평가를 마친 후, 귀하께서 교육구가 진행한 귀 자녀에 대한 평가
17 결과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교육구의 부담으로 독자적 교육 평가를 요청할
18 권리가 있습니다. 독자적 교육 평가를 요청하시면, 교육구에서 귀하께 독자적 교육
19 평가를 구할 수 있는 곳과 독자적 교육 평가에 적용되는 교육구의 조건사항의 정보를
20 제공합니다. 부모는 교육구가 시행한 평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때마다 공공 비용으로
21 1 회의 독자적 교육 평가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구측에서 독자적 교육
22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교육구는 법적 청문회 위원에게 청문회를
23 요청하여 귀하의 독자적 교육 평가 요청에 대한 반론을 재기하고 교육구의 평가는
24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교육구에서 승소하여도 귀하께서는 독자적 교육
25 평가를 구할 권리가 아직 있지만 공공비용으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본인부담으로
26 독자적 교육 평가를 받기로 한다면, 교육구에서 평가결과를 검토해야 합니다. 독자적
27 교육 평가는 교육구의 평가에 적용되는 모든 기준에 준수해야 합니다.

1
2
3
4 만일, 교육구에서 평가 중에 귀 자녀를 수업 중에 관찰하였거나 교육구의
5 절차상으로 수업 중 관찰이 허용되었다면 독자적 교육 평가를 하기 원하는 단체에게도
6 현재 어떠한 교육적 배치 상황에서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7
8

9 만일, 귀하께서 일방적으로 귀 자녀를 비공립 학교에 등록시키고 비공립 학교의
10 등록 비용을 공공비용으로 부담할 것을 제안할 경우, 교육구에서는 먼저 제안하신
11 배치와 그렇게 배치된 귀 자녀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12 (20 U.S.C. section 1415(b)(1); 34 C.F.R. section 300.502; Education Code section
13 56329.)
14
15

16 IEP 회의

17 특수교육 학생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로서, 귀하는 IEP 팀의 구성원이 되고 귀
18 자녀를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 판별하고 장애 여부 평가와 교육적 배치를 논의하기 위해
19 모이는 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IEP 또는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20 Education Program)이라 함은, 장애를 가진 각 아동을 위한 서면으로 된 문서로서,
21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 개발하고 검토하고 수정합니다. IEP 에는 아동의 현재 학업
22 성과와 기능적 성과 수준이 포함되고 귀 자녀의 교육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부모로서의
23 귀하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로서, 귀하는 귀 자녀의 교육적
24 배치와 관련되어 판단을 하는 어떠한 모든 그룹의 일원이 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25 귀하께서는 귀 자녀에 대해 특별한 지식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개인을 IEP 회의로 모셔 올
26 권리가 있습니다. 귀 자녀가 3~5 세일 경우, 부모와 교육구가 서로 동의한다면, 개별
27 가정 서비스 계획 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 (IFSP)를 IEP 대신으로 사용합니다.
28
29
30
31

1 연방법과 주법에 의하면 16 세에 도입되는 첫 IEP 에 아동의 과도기 서비스의
2 필요성(transition service needs)에 대한 문구를 포함하고 그후로 매년 새롭게 보완해야
3 합니다. 16 세 또는 이전에 IEP 팀이 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면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4 목표를 훈련, 교육, 직장고용과 필요한 경우에는 자립을 위한 생활기술과 관련되어
5 세우고, 아동이 번역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문구와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필요한
6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책임 또는 기관의 연계성 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합니다. 아동이
7 최소한 18 세가 되기 1 년 전부터 아동에게 성인이 되는 나이에 본인에게 권한이
8 이월된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문구를 IEP 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의하면,
9 아동이 18 세가 되었을 때 성인으로 간주되 단, 부모가 법정 절차를 통해 아동에 대한
10 보호자역(conservatorship) 또는 후견인역(guardianship)을 신청하여 취득하지 않는다면,
11 아동은 자신의 교육과 관련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습니다.
12
13
14

15 귀 자녀를 위한 IEP 를 수립할 때에, IEP 팀은 아동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16 학습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긍정적 행동 개입 전략과 지원(positive behavioral
17 intervention strategies and supports)을 포함하고 필요에 따라 긍정적 행동 개입 전략과
18 지원을 포함한 전략을 고려하여 아동의 행동을 다루어야 합니다. IEP 팀원 중 하나인
19 아동의 일반 교육 교사는 가능한 한도내에서 아동의 IEP 수립에 참여해야 하며 이
20 과정에는 적절한 긍정적 행동 개입 전략의 결정과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충
21 서비스의 결정과 프로그램 조정과 학교 직원을 위한 지원에 대한 결정도 포함됩니다.
22
23
24

25 IEP 팀은 최소한 1 년에 1 회로 IEP 를 검토하여 아동을 위해 설정한 연간 목표가
26 이루어지고 있는 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다음을 위하여 IEP 를 조정합니다: (1) 연간
27 목표와 필요한 경우 일반 교과과정에서 세운 기대되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다루고,
28 (2) 재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처리하고, (3) 귀하께서 제공한 귀 자녀에 대한
29 정보에 중점을 두고, 4) 필요하다면 귀 자녀가 앞으로 필요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30 중점을 둡니다. 귀 자녀는 일반 교육 학생과 동일한 형식의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31

1 귀하와 교육구는 IEP 팀원 중 한명이 그가 담당하는 분야에 대한 교과 과정 또는 관련
2 서비스가 조정이 되지 않거나 회의때 논의되지 않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아도 될 것을
3 서면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와 교육구 IEP 팀원이 IEP 팀회의때 전체 또는
4 일부를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서면으로 동의하고 허락했는데, 그 팀원이 담당하는
5 교과과정 또는 관련 서비스를 조정하거나 논의된다면, 그 팀원은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6 IEP 수립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귀하와 IEP 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7 주법에 의하면, 귀하는 IEP 의 다른 팀원들에게 24 시간의 사전통보를 주었다면 IEP
8 회의를 전자식으로 녹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한 학년도의 연간 IEP 회의 후에
9 귀하와 교육구는 연간 IEP 를 변경하기 위한 IEP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문서를 작성하여
10 현 IEP 를 수정 또는 조정하기로 서면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11 (20 U.S.C. section 1414(d); 34 C.F.R. sections 300.320-300.324; Education Code
12 sections 56032, 56304, 56341, 56341.1, 56341.5, 56342.5 and 56345.)

13
14
15
16
17 **법적 조치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18 **학생의 학업 배치 (“STAY-PUT”)**

19 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로서, 귀 자녀의 장애 판정, 평가, 또는 배정에 대해
20 교육구의 결정과 동의하지 않고 법적청문회를 신청하셨다면 귀 자녀는 청문회의 판결이
21 나오기 전까지 현재의 학업 배치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stay-put”). 귀하와 교육구가
22 서로 배치에 대한 변경에 동의하거나 교육구에서 법원 명령서를 받거나 청문회
23 담당자로부터 명령서를 받지 않았다면, 귀 자녀는 청문회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현재의
24 학업 배치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경우에는 귀자녀가 학부모의
25 동의 하에 모든 절차가 완결되기까지 공립 학교 프로그램에 배정받게 됩니다. 이
26 일반지침에는 예외가 있어서 교육구가 제한된 기간동안 귀 자녀를 대안의 학업 환경에
27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의 사항은 다음 항목인 임시 대안 학업 환경에서 더
28 설명합니다.

29 (20 U.S.C. section 1415(j); 34 C.F.R. section 300.518; Education Code section
30 56505(d).)

1 학교 직원은 귀 자녀를 다음과 같은 상황에 귀 자녀의 장애 여부와 상관 없이 임시
2 대안 학업 환경에 45 일 정상 수업일까지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귀 자녀가 (1) 학교에,
3 학교에서, 또는 학교 행사 또는 활동 중에 무기를 가지고 오거나 소지하고 있거나; (2)
4 고의로 불법 약물을 소지하거나 사용하거나, 학교에서, 학교 주변에서, 학교 행사나 활동
5 중에 통제 물질을 팔거나 광고하거나; (3) 학교에서, 학교 주변에서, 학교 행사나 활동
6 중에 타인에게 심한 부상을 입혔을 경우입니다. IEP 팀은 서비스를 받기 위한 임시 대안
7 학업 환경을 결정합니다. 아동이 현재의 배치에서 같은 학년도 중에 10 일 정상 수업일
8 간 재배치된 후에, 교육구에서는 재배치 기간동안 아동이 다른 환경 속에 있더라도 일반
9 교육과정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IEP 목표를 향해 성장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10 합니다. 적합한 경우에는 아동에게 기능적 행동 평가와 행동 위반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11 고안된 행동 개입 서비스와 조정을 제공합니다.

12
13
14
15
16
17
18 귀 자녀에 대하여 징계 처벌을 내리기로 결정이 내려진 날짜 이전에, 교육구는
19 귀하께 귀하의 절차상 보호책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배정과 관련된
20 결정이나 귀 자녀의 행동이 장애로부터 왔다는 판단과 동의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신속한
21 청문회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이는 청문회를 요청한 뒤 20 일 수업일 이내에 시행되어야
22 합니다. 청문회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에, 귀하와 교육구에서 다른 대안에 동의하지
23 않는 한, 귀 자녀는 청문회 담당자의 판결이 나오거나 아니면 45 일 수업일이 지날때까지
24 임시 대안 교육 배치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만약, 교육구에서 귀 자녀가 원래의 교육
25 배치로 돌아오는 것이 귀 자녀나 타인에게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교육구 측이
26 신속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청문회 담당자는 귀 자녀를 원래 배치로 돌려 보냈을 때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2 입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귀 자녀를 적절한 임시 대안 교육 배치로 변경을
3 지시하되 45 일이 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4 (20 U.S.C. section 1415(k); 34 C.F.R section 300.530 and Education Code section
5 48915.5.)

8 학부모가 사립학교에 등록시킨 장애를 가진 아동

10 사립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한 교육구의 책임은 제한되어
11 있습니다. IDEA 에 따르면, “*학부모가 주도하여 사립학교에 등록한 장애를 가진 그
12 어떠한 아동도, 공립학교에 등록한 아동에게 주어지는 특수 교육과 관련 서비스 일부
13 또는 모두를 받을 개별 권리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교육구는 종교 재단의 학교를
14 포함하여 모든 사립학교의 장애를 가진 아동과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의 위치를
15 파악하고 찾아내고 평가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아동찾기 Child Find”라고
16 합니다. 사립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교육구를 “District of Location”이라고 하며,
17 사립학교에 부모에 의해 등록된 아동을 찾는 활동을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District of
18 Location 이 사립학생의 부모가 거주하는 지역의 교육구와 동일하지 않을 경우, District of
19 Location 은 거주지의 교육구에 연락하여 아동이 평가받게 할 수 있습니다.

23 사립학교에 등록한 장애를 가진 아동은 사립학교와 학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24 결정한대로 동일한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서비스를 받기
25 위해서는 “서비스 플랜 Service Plan”을 사립학생을 위해 수립하고 학부모가 동의해야
26 합니다. 사립학교가 위치한 교육구, 즉, District of Location 은 서비스 플랜을 수립하고
27 시행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1 자녀를 사립학교에 등록한 부모는 교육구의 아동찾기 활동에 한해서만 법적 불만
2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불만 신고는 사립학교가 위치한 교육구, 즉, **District of**
3 **Location** 과 캘리포니아 교육부(CDE)에 접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로 의해
4 사립학교에 등록한 아동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받을 개별 권리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
5 플랜에 대한 불만 신고는 오직 CDE 의 특별 감사 불평 신고 절차에 따라서만 접수할 수
6 있습니다.

7 (20 U.S.C. section 1412(a)(10)(A); 34 C.F.R. section 300.130–300.144; Education Code
8 sections 56170–56177.)

9 학부모가 일방적으로 사립학교에 등록했을 경우

10
11
12 교육구에서 귀 자녀를 위하여 무상의 적합한 공공 교육을 제공하고자 했지만
13 귀하께서 일방적으로 귀 자녀를 사립학교에 등록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교육구는 귀
14 자녀의 교육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교육구로부터 특수 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15 포함한 사립학교 비용을 지불받기 원한다면 먼저 교육구의 동의를 구하기를 시도하고
16 교육구가 귀 자녀를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정해야 합니다.
17 귀하의 청구 요청은 다음의 경우에 거부되거나 감소된 금액이 지불될 수 있습니다. 1)
18 귀하께서 귀 자녀를 공립학교에서 나오게 하기 전에 귀하께서 최근에 참석한 IEP 회의
19 때에 귀하의 염려하는 부분과 귀 자녀를 공립 예산으로 사립학교에 등록하고자 하는
20 의도를 표현한 진술서를 포함하여 교육구에서 귀 자녀를 위해 무상의 적합한 공공
21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배치를 거부하겠다는 사실을 IEP 팀에게 알리지 않았을 경우; 또는
22 2) 귀 자녀를 공립학교에서 나오게 하기 최소한 10 일 정상영업일 전에 귀하께서 교육구
23 측에 교육구가 제시한 배치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과 귀 자녀를 공립 예산으로
24 사립학교에 등록하고자 하는 의도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25
26
27
28 귀하께서 귀 자녀를 공립 학교에서 나오게 하기 전에 교육구 측에서 귀 자녀를
29 평가하고 그 평가의 목적에 대해 알렸다면, 귀하께서는 귀 자녀를 평가받게 해야 합니다.
30 만약, 귀 자녀가 이러한 요구사항에 준수하지 않았다면, 법원 또는 청문회 담당자가
31

1 귀하께서 일방적으로 귀 자녀를 공립학교에서 나오게 하여 사립학교에 등록시킴으로써
2 비합리적으로 행동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 또는 청문회 담당자는 귀하께서
3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변상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4 귀하께서 글을 모르고 영어로 글을 쓰지 못하거나, 2) 교육구의 배치로 인해 귀 자녀에게
5 신체적 또는 심한 정서적 해로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6 (20 U.S.C. section 1412(a)(10)(C); 34 C.F.R. section 300.148; Education Code sections
7 56175-56177.)

불만사항을 제시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

주 정부의 불만 신고 절차

12 IDEA 는 학부모에게 자녀의 장애 여부 판단과 평가 또는 자녀의 학업 배치 또는
13 자녀에게 제공하는 무상의 적합한 공공 교육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불만을
14 제시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면으로 작성한 불만 신고는 교육구 또는
15 주 정부 또는 연방 정부 기관에 다음과 같이 열거한 주소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규정을
16 준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불만 신고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 년 전 사이에 일어난
17 사건이어야 합니다. 서면으로 작성한 불만 신고 사본을 주 정부 기관에 접수할 같은
18 시기에 귀 자녀를 담당하는 교육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교육구나 주 정부 또는 연방
19 정부 기관은 불만 신고를 접수한 후 60 일 이내에 불만 사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20 교육구에 불만 신고를 접수했을 경우, 교육구에서 답변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교육구의
21 판결을 캘리포니아 교육부(CDE)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의서는 직접 CDE 에
22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26 애너하임 연합 고등학교 교육구 Anaheim Union High School District
27 수신: 특수 교육 감독 Attn: Special Education Administrator
28 주소: 501 Crescent Way
29 Anaheim, CA 92803
30 팩스번호: (714) 635-590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센트랄리라 교육구 Centralia School District
수신: 특수 교육 감독 Attn: Special Education Administrator
주소: 6625 La Palma Avenue
Buena Park, CA 90620
팩스번호: (714) 523-5981

싸이프레스 교육구 Cypress School District
수신: 특수 교육 감독 Attn: Special Education Administrator
주소: 9470 Moody Street
Cypress, CA 90630
팩스번호: (714) 220-6703

로스 알라미토스 통합 교육구 Los Alamitos Unified School District
수신: 특수 교육 감독 Attn: Special Education Administrator
주소: 10293 Bloomfield
Los Alamitos, CA 90720
팩스번호: (562) 799-4738

매그놀리아 교육구 Magnolia School District
수신: 특수 교육 감독 Attn: Special Education Administrator
주소: 2705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팩스번호: (714) 826-8736

사바나 교육구 Savanna School District
수신: 특수 교육 감독 Attn: Special Education Administrator
주소: 1330 S. Knott Ave.
Anaheim, CA 92804
팩스번호: (714) 828-5325

1 캘리포니아 교육부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2 특수교육국 Special Education Division
3 절차상 보호책 의뢰 서비스 Procedural Safeguards Referral Service
4 주소: 1430 N Street, Suite 2401
5 Sacramento, California 95814
6 전화번호: 1-800-926-0648
7 팩스번호: (916) 327-3704

8 미국 연방 교육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ducation
9 인권 사무국 Office for Civil Rights
10 주소: 50 Beale Street, Suite 7200
11 San Francisco, CA 94102
12 전화번호: (415) 486-5555
13 팩스번호: (415) 486-5570
14 TDD: (877) 521-2172

15
16
17 교육구는 귀하가 불만 신고를 교육구에 먼저 하기를 권유합니다. 귀하와 만나고
18 귀하의 불만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하여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하도록 할 것입니다.
19 교육구에서는 불만신고절차 중에 비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불만 신고서 양식은
20 교육구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20 U.S.C. Section 1415(b)(6); 34 C.F.R. section
21 300.153; Education Code section 56500.2; 5 CCR section 4600.)
22
23

24 **B. 중재와 청문회 절차**

25 IDEA 는 귀 자녀의 장애 여부 판단과 평가와 학업 배치 또는 무상의 적합한 공공
26 교육(FAPE)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중재와 비차별 청문회 절차를 확립하도록
27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 또는 교육구는 중재만 요청하거나 청문회를 요청할 수
28 있습니다.
29
30
31

1 귀하는 중재만 요청하거나 청문회를 요청할 때에 아동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2 학년, 재학 중인 학교 이름, 학부모 정보, 중재에 개입된 개인의 정보, 문제에 대한 설명에
3 포함되는 관련 사실들, 문제 해결 제시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귀하가 중재만
4 요청하시거나 청문회를 요청할 때에 필요한 양식을 CDE 에서 개발하였습니다. 다음
5 링크에서 양식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7 <http://www.oah.dgs.ca.gov/Special+Education/default.htm>

8 교육구에 대한 중재만 요청하거나 법적 청문회를 요청할 때에 요청서 사본을 행정
9 청문회 사무실에 다음 주소로 접수해야 합니다:

10
11 행정 청문회 사무실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12 수신: 특수 교육 부 Attn: Special Education Division

13 주소: 2349 Gateway Oaks Drive, Suite 200

14 Sacramento, CA 95833-4231

15 전화번호: (916) 263-0880

16 팩스번호: (916) 376-6319
17

18 캘리포니아에서 중재는 자발적인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중재만 요구하실 수도
19 있고 청문회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재만 요청하신다는 것은 청문회 절차가 없이
20 중재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중재는 적대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비공식적으로
21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만약 중재만 요구하신다면 귀하와 교육구는 중재 날짜가
22 정해졌다는 통보를 받고 통보지에는 시간과 날짜와 장소를 포함하여 해당 사건을
23 담당하게 될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중재자의 성함, 주소, 전화번호가 포함됩니다. 중재
24 날짜는 행정 청문회 사무실에서 요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로 정해져야
25 합니다. 중재만 시행할 때에는 변호사가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와 교육구는
26 변호사가 아닌 대변인과 동참하며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와 교육구 측에서 중재
27 중에 서술한 내용은 비밀 보장되고 청문회에서나 법적 절차 중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28 중재 중에 서로 합의가 되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모든 관계자가 서명해야
29 합니다. 귀하는 또한 교육구 측에게 대안의 논쟁 해결방안 (alternative dispute
30 resolution[ADR])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도 역시 청문회를
31

1 시행하는 것보다 덜 적대적인 상황에서 진행됩니다. ADR 과 중재는 논쟁을 해결하기
2 위한 자발적 방법입니다. 만일 논쟁이 중재 또는 ADR 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는
3 청문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문회를 요청하기 위해서 중재나 ADR 을 먼저
4 거쳐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5
6
7 청문회는 공식적인 절차로서 귀하와 교육구 측이 증인과 문서증거와 구두 및
8 서면으로 된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여 특수 교육과 관련된 논쟁에 대한 각 관계자의
9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청문회 절차 도중에 언제든지 귀하는 중재 회의를 요청할
10 수 있습니다. 청문회 요청은 귀하 또는 교육구가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불만의 원인이
11 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알게 되었거나 알았어야 했을 시기로부터 2년 이내로 접수해야
12 합니다. 청문회 요청을 위한 접수를 한 후에, 귀하와 교육구는 행정 청문회 사무실로부터
13 청문회 시간과 날짜와 장소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됩니다.

14
15
16
17 공명정대한 청문회를 열기 이전에, 귀하의 불만 신고로 인한 청문회 요청이
18 접수되고 15 일 이내로, 교육구는 필수적으로 귀하와 귀하가 불만을 갖게 된 것을
19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실에 대한 특정 지식이 있는 주요 IEP 팀원간의 문제 해결을 위한
20 필수 회의를 개최하여 귀하께서 귀하의 불만과 불만을 갖게 된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21 사실에 대해 논의하고 교육구측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22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에는 교육구를 대변하여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교육구 측의
23 대표가 참석해야 하되, 학부모가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는 한, 교육구를 위한 변호사를
24 대동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와 관련되어 지불되지 않을 수
25 있습니다. 교육구 측에서 동의하지 않는 이상, 귀하께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 회의를
26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 회의 때에 해결점에 도달하였다면, 모든
27 관계자는 법적 효력이 있는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구 측이 귀하께서 불만
28 신고를 접수한 후 30 일 이내에 귀하의 불만을 귀하가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해결하지
29 않았다면, 계속해서 청문회를 진행하고 청문회의 예정된 모든 절차가 시작됩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청문회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귀하께서 접수하신 불만 신고 내용에만 국한됩니다. 공명정대한 청문회 담당자가 청문회를 통솔합니다. 귀하께서는 변호사와 특수한 필요가 요구되는 아동의 문제와 관련되어 특별한 지식이 있거나 훈련을 받은 개인을 대동하여 조언을 받을 권리와;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된 진술을 제시할 권리와; 증인을 대면하고, 반대 심문하고, 출석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와; 청문회를 내용을 필기한 자료 또는 녹음기로 녹음된 내용을 취할 권리와; 사실과 결정을 서면으로 정리한 내용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청문회가 개최되기 최소한 10 일 전에, 귀하와 교육구측은 청문회에서 다루어질 안건과, 문제 해결에 대한 제시와 각 당사자가 청문회 때에 변호사가 대변할 지에 대한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청문회가 개최되기 최소한 5 일 정상 영업일 전에, 귀하와 교육구측은 청문회 때에 참석할 증인과 제시할 증거를 모두 공개해야 하며, 여기에는 완성된 평가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증인이나, 증거나, 평가결과가 청문회 때에 증거로 제시할 수 없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청문회 담당자는 귀 자녀가 무상의 적합한 공립 교육의 원칙에 따른 보호를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청문회 담당자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고, 청문회 행정 사무실 또는 공공교육 담당 주 교육부 장학관의 청문회 신청 접수 후 45 일 이내에 귀하와 학군에 판결 사본을 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단, 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내리는 판결은 반복할 수 없지만, 청문회의 어느 한쪽의 당사자가 청문회에서 밝혀진 불만 신고에 대한 증거와 판결을 항소하기 위해 민사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20 U.S.C. sections 1415(b)(7)(a)–1415(j); 34 C.F.R. sections 300.506–300.518; Education Code sections 56500.3, 56502–56507; 5 CCR section 3082.)

1 민사 소송

2 귀하 또는 교육구 측은 청문회 담당자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고 민사 소송을 통해
3 항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는 행정정 소송절차의 기록과 필사를 법원에 제출해야
4 합니다. 법원에서는 어느 한쪽의 당사자로부터 요청한대로 추가의 증거를 들어 줄 수
5 있으며, 증거의 중요성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민사 소송은 미국 지역 법정 또는
6 오렌지 카운티 고등 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청문회 담당자의 판결을 받은 후
7 90 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8 (20 U.S.C. section 1415(i); 34 C.F.R. sections 300.514, 300.516; Education Code
9 section 56505(k).)

12 변호사 비용

13 미국 지역 법원 또는 오렌지 카운티 고등 법원은 청문회 또는 소송 중에 귀하께서
14 승소하였을 경우 적절한 선에서 귀하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권한이 있고; 또는 귀하의
15 변호사가 소소하고, 비합리적이고, 근거없는 불만을 접수하거나 관련된 행위가 법적
16 절차 진행을 방해하고, 불필요하게 지연시키고, 진행 비용의 불필요한 증가를
17 유발하였을 경우, 교육구측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비용은 법적
18 절차가 진행되는 지역의 일반적 비용 금액에 근거하여 지급합니다. 청문회가 열리기
19 최소한 10 일 전에 교육구 측에서 서면으로 합의를 제시하였는데, 합의 내용보다 귀하가
20 받은 판결이 더 좋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법원 또는 청문회 담당자가 판단하게 될
21 때에는 귀하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합의 내용을 정당한
22 근거 하에 거부하였다는 판결이 내려지거나 교육구 측에서 비합리적으로 소송절차를
23 지연하였을 때에 변호사 비용 지불금액을 줄이지 않습니다.

27 만약, 귀하께서 논쟁의 판결을 비합리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비합리적인 비용을
28 청구하였을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과 관련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29 문제의 해결을 위한 회의나 IEP 팀 회의에 참석한 시간에 대한 비용도 지급 받을 수
30
31

1 없습니다. 단, IEP 팀 회의가 행정 소송 절차 또는 법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는
2 제외합니다.
3 (20 U.S.C. section 1415(i)(3); 34 C.F.R. section 300.517; Education Code section
4 56507(b).)

6 가주 특수 학교

7 가주 특수 학교는 캘리포니아 교육구에 의해 운영되며, 농, 난청, 맹, 시력 장애,
8 또는 시청각 장애가 모두 있는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세 곳의 학교가
9 있습니다: 프리몬트와 리버사이드에는 농아를 위한 캘리포니아 학교가 두 곳이 있으며,
10 프리몬트에 맹인을 위한 캘리포니아 학교가 있습니다. 기숙사 프로그램과 데이스쿨
11 프로그램으로 농아를 위한 주 운영 학교에서는 영아부터 21 세의 학생을 받고 있으며,
12 맹인을 위한 주 운영 학교에서는 5 세부터 21 세의 학생을 받고 있습니다. 주 운영 특수
13 학교는 평가 서비스와 기술적 보조를 제공합니다. 주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대한
14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캘리포니아 교육국 홈페이지 <http://www.cde.ca.gov/sp/ss/> 를
15 방문하시거나 귀 자녀의 IEP 팀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 (Education Code section 5632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